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79호 2018. 12. 26.(수)

## 【조 례】

제1229호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
제1230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123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8
제1232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1233호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규 칙】

공주시의회 규칙 제550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	----

## 【훈 령】

제277호 공주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19
--	----

## 【예 규】

## 【공 고】

제2018-2104호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7
제2018-2117호 공인 신조 공고 .....	37

## 【고 시】

제2018-223호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49
---	----

회 람							
--------	--	--	--	--	--	--	--

##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229호

###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  
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기업유치 및 인구대책, 문화경제 분야 등 의정활동 자문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사·의결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공동위원장 : 의장
2. 위촉직 공동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3. 위촉직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위원은 12인 이내로 한다.

1. 의회운영분과위원회
2. 기획예산분과위원회
3. 행정복지분과위원회
4.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제4조(위촉)** ①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어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분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비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230호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  
표1, 월정수당은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공주시 소속 공무  
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 중 “여비를”을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표** (제2조 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의원 1인)의 지급기준표** (제2조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19년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1,744,200원으로 한다.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공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8.)  
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231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232호

###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을 “시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  
인에 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중전의 제7조)제3항 중 “시장”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26일

공주시 조례 제1233호

###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문화교육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등

제4조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을 “시장이 지방문화예술”로,  
“필요”를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12.18)  
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주시의회의장 박 병 수 인

2018년 12월 26일

공주시의회 규칙 제550호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 사. 행정소송수행 업무

제2조제1호아목(종전의 바목) 중 “기타 의사분야”를 “그 밖에 다른 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홍보분야

- 가. 의회홍보 업무총괄
- 나.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라. 의회 보도자료 수집·홍보
- 마. 각종 홍보자료(의회 소식지 등) 발간 및 배부
- 바. 축사, 각종 원고 및 대담자료 작성
- 사. 방송통신장비 운용·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

아. 각종 포상 및 위원회 관리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각 위원회별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26일

###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시는 근로자대표  
와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근로자에게 2주 이내 또는 3개  
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1주 48시간을 한도로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단위기간이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1주 52시간을, 1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과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시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제34조의4(시차출퇴근제) ① 시는 필요한 경우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

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출근·퇴근시간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의5(시간선택제 전환제) ① 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준용한다.

제62조제1항 중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8년 1월 4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 근로시간 단축일(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날짜)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퇴직금 산정
2. 근로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 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로 보고 퇴직금 산정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별표 4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일(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날짜)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일을 평균임금 산정시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주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퇴직금)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중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을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1】(제24조 관련)

## 공무직의 정원표

### 1. 공무원 정원(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제외)

(단위: 명)

소속부서	계	단순노무원	행정사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비고
<b>계</b>	<b>227</b>	<b>49</b>	<b>95</b>	<b>11</b>	<b>72</b>	
<b>본청</b>	<b>143</b>	<b>38</b>	<b>46</b>	<b>11</b>	<b>48</b>	
기획담당관	1		1			
시민소통담당관	2		2			
행정지원과	2		2			
회계과	3	3				
세무과	1		1			
평생교육과	9		9			
토지정보민원과	2		2			
관광과	4		4			
문화재과	4	1	3			
복지정책과	8	2	6			
경로장애인과	7	6	1			
여성가족과	9		9			
환경보호과	1		1			
자원순환과	49	1			48	
지역경제과	1		1			
도시정책과	1		1			
교통과	2	2				
도로과	16	3	2	11		
상하수도과	21	20	1			
<b>의회사무국</b>	<b>2</b>		<b>2</b>			
<b>직속기관</b>	<b>55</b>	<b>11</b>	<b>44</b>			
보건소	44	1	43			
농업기술센터	11	10	1			
<b>사업소</b>	<b>3</b>		<b>3</b>			
휴양사업소	3		3			
<b>읍면동</b>	<b>24</b>				<b>24</b>	
유구읍	4				4	
이인면	2				2	
탄천면	2				2	
계룡면	3				3	
반포면	3				3	
의당면	2				2	
정안면	2				2	
우성면	2				2	
사곡면	2				2	
신흥면	2				2	

## 2. 청원경찰의 정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명)

소속부서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 녹지 감시	주정차 일반단속	과적 차량 단속	문화재 보호감시	
계	25	13	10	2	2	1	3	2	2
본 청	21	11	10	2	2	1	3	2	
시 민 안 전 과	1	1							
회 계 과	2	2							
문 화 재 과	4	2	2					2	
북 지 정 책 과	1	1							
자 원 순 환 과	1	1							
도 시 정 책 과	2		2		2				
건 설 과	2		2	2					
교 통 과	1		1			1			
도 로 과	3		3				3		
상 하 수 도 과	4	4							
사 업 소	4	2							2
문 화 시 설 사 업 소	2	2							
휴 양 사 업 소	2								2

【별표 3】 (제62조제2항 관련)

### 채용년도별 퇴직금 산정방법

채용년도별	근속년수	산정방법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	10년이상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 150%
	5년이상 10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1년이상 5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 군복무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 중 3년 범위내에서 가산

【별표 4】 (제62조제4항 관련)

## 채용연도별 퇴직금 산정방법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이 근로시간 단축시점 기준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

채용연도별	근속년수	산정방법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	10년이상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 150%
	5년이상 10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1년이상 5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 군복무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 중 3년 범위내에서 가산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상위법령 명칭과 불일치한 사항을 수정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3. 주요내용

- 상위 법률 명칭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하고 해당 조문 및 용어 정비

- 축산·수산 및 곤충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사업(제9조제2항제3호)
- 고품질 밤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3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26. ~ 2019. 01. 1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01. 15.(화)까지 공주시장(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 주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 우편번호 32528
- 전화번호 : 041-840-8660 FAX : 041-840-2342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이라 함은”을 ““농촌”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을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으로 한다.

제5조 제목 “(농어업인의 책무)”를 “(농업인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을 “농업인은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7조 제목 “(농어업관련 주체간 협력)”을 “(농업관련 주체간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기반”을 “축산·수산 및 곤충산업기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3호 “친환경 밤 베기 지원사업”을 “고품질 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u> <u>조례</u>	<u>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u>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u>농어업·농어촌</u> 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	제1조(목적) ----- ----- ----- ----- ----- <u>농업·농촌</u> ----- -----

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어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주시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  
-----  
-----  
-----  
-----  
-----  
-----.

제2조(정의) -----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 "농업인"-----  
-----.

3. "농촌"이란 -----  
--.

제3조(기본원칙) ----- 농업·농촌 -----  
-----  
-----.

1. (현행과 같음)
2. ----- 농가 -----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제4조(시의 책무) 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책무) 공주시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의 책무) 공주시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공

농업인-----

3. ----- 농업  
-----

4. ---- 농촌-----  
-----

5. 농촌지역-----  
----- 농업인-----

제4조(시의 책무) ① -----  
----- 농업-----  
-----  
-----

② -----  
-----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  
-----

제5조(농업인의 책무) -----  
농업인은 농업·농촌-----  
-----  
-----  
-----

제6조(소비자의 책무) -----  
---- 농업·농촌-----

익기능의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업관련 주체간 협력)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하며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

-----  
-----  
-----  
--.

제7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  
-----  
농업·농촌 -----  
-----  
-----  
-----.

제9조(지원대상) ① -----  
-----  
----- 농업·농촌 -----  
-----  
-----  
-----.

② -----  
-----  
----- 농업인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축산·수산 및 곤

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가축  
방역, 가축분뇨처리, 조사료생  
산 등 지원사업

4. ~ 7. (생 략)

③ 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3.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사업

14.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설치된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  
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  
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  
업·농어촌 지원에 관하여 추후

충 산업기반-----

4. ~ 7.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고품질 밤산업 육성 및 발전  
을 위한 사업

1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사업 결정) -----  
-----농업·

농촌 -----

농업·농촌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  
·농촌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공인 신조 공고

2019년 공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 공 주 시 장

1. 공인 신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2. 신조 공인 사용개시일 : 2019. 1. 1.
3. 신조 공인 내역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행정지원과	공주시 행정지원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행정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시민안전과	공주시 시민안전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시민안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시민안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주민공동체과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평생교육과	공주시 평생교육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평생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평생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일반민원전용	목재 2.4×2.4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가족관계등록민원전용	목재 2.4×2.4 훈민정음체		
“	공주시 토지정보민원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토지정보민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토지정보민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일반민원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1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2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3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4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5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6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7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	토지정보민원과 공주시장인 제8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문화체육과	공주시 문화체육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문화체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문화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관광과	공주시 관광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복지정책과	공주시 복지정책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복지정책과	공주시 복지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복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영관인 복지정책과	목재 1.8×1.8 훈민정음체		
경로장애인과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영관인 경로장애인과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여성가족과	공주시 여성가족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여성가족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여성가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영관인 여성가족과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환경보호과	공주시 환경보호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환경보호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환경보호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자원순환과	공주시 자원순환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자원순환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자원순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지역경제과	공주시 지역경제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지역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지역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산림경영과	공주시 산림경영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산림경영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산림경영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상하수도과	공주시 상하수도과 분임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상하수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상하수도과	공주시 상하수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휴양사업소	공주시 휴양사업소장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휴양사업소 징수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휴양사업소 재무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휴양사업소 물품관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휴양사업소 지출원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휴양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휴양사업소	공주시 휴양사업소 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휴양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휴양사업소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 공 주 시 장

### 1. 대상 및 결정내용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주택이외의 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 1㎡당 기준가액 및 기타 각종지수 등은 행정안전부 기준과 동일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토지·건축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부수시설물,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은 행정안전부 기준과 동일

### 2. 열람장소

-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840-836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